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제1660호 2010. 7. 23.

규 칙

제611호	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2
제61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규 칙

서울특별시증량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증량구청장

서울특별시증량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의 (안 제2조)

-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
-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3) "경상적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재원

나.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 1)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 2)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안 제5조)

-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 지급대상 여부
- 2) 지출 절약액 및 수입 증대액 규모
- 3)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 4)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 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희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 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정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직제 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률,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처음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처음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4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촉직 위원)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며, 감사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는 행정국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5급·6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10일까지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랑구 공무원
2. 중랑구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조직

제16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한다.

제17조(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 절약내용을 동일 소관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중량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일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매인간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매인 지정기준(안 제4조)

- 1) 제1항 중 “법 제16조제4항 및” 삭제
- 2) 제2항제1호가목 중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로 개정
- 3) 제3항에 단서를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장소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로 신설
- 4) 제5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소매인은 지정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4항 및”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로 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장소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소매인은 지정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바. (생략)</p> <p>2. (생략)</p> <p>③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단서 신설></u></p> <p>④ (생략)</p> <p>⑤ <u>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p>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p>②</p>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p>1</p>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p>-----</p> <p>가. <u>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바.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p>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p><u>다만 제4조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장소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소매인은 지정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u></p>